# 안 건 번 호 5

# 2023학년도 군산중앙초 학교규칙 전부개정 심의(안)

발의년월일: 2023. 10. 16. 제 안 자: 학교장

## 1. 제안 이유

- 가. 군산중앙초등학교 학교 규칙의 정비가 필요하여 전부개정 필요 (필요규정 추가 및 불필요 규정, 학생생활규정과 중복된 내용 수정 또는 삭제)
- 나. 교육부고시 제2023-28호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변경 필요(2023.12.31.한 정비완료)

### 2. 제안 근거

가.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)

- 나.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제40조의3(학생생활지도)
- 다. 학교생활문화과-3346(2023.8.31.)
- 라. 교육부고시 제2023-28호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(2023.9.1. 공포·시행)
- 마. 전북교육인권센터-3306(2023.09.06.)

### 3. 심의 내용

가. 군산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(개정안) (붙임 참조)

## 4. 학칙 개정 절차

- 가. 교직원 의견수렴 (2023.10.11.수 교무회의)
- 나. 학생(4~6학년) 의견수렴 (2023.10.11.수 학급회의)

- 나. 학부모 의견수렴 (2023.10.11.~13 네이버 폼 설문)
- 다.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개최 (2023.10.13. 심의위원회 8명, 교장실)
- 라.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(2023.10.23.월)
- 마. 학교 규칙 개정 및 공고

붙임: 군산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(전부개정안) 1부. 끝.